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박금환 소유물건(2024타경4545)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

감정평가서번호: 부경2411-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경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박영준

감정평가액	삼억팔천일백이십구만일천원정(₩381,291,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금환 (2024타경4545)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1.06	2024.11.05	2024.11.07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331	토지	331	-	381,291,000
		이	하	여	백	
합계					₩381,29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대상물건의 개요

1. 토지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1	구평동 산58-6	331	임야	공업 나지	준 공업	세각 (가)	부정형사 완경사	689,500

I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소재 “구평동주민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및 근거

본건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1월 06일로 하였음.
- 본건은 대상물건의 소재지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실시일은 2024년 11월 05일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 1)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함.
- 2)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조건

없음.

5. 그 밖의 사항

본건 토지중 남측으로 약 70㎡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III.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의 방법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 (1)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
- (2)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
- (3)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개요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거래사례 등 가격참고자료 분석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토지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3) 시산가액의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건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IV.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구평동 256-1	585	공장 용지	공업용	준공업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669,500

2) 비교표준지 선정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상기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24.01.01~24.11.06) (공업)

2024.01.01 ~ 2024.09.30 : 1.771

2024.09.01 ~ 2024.09.30 : 0.329

$(1 + 0.01771) * (1 + 0.00329 * 37/30)$

≒ 1.02184

※ 2024년 10월 지가변동률이 미발표되어 2024년 09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 하였음.

(3)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환경 조건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공업용수
	자연환경	공장배수
획지조건	면적, 형상 등	지반, 지질 등
		면적
		형상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고저
		조장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비교치
1	1.00	1.00	1.00	1.00	0.99	1.00	0.99
결정 의견	평가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점을 감안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대법원판례(2003.07.25. 선고 2002두 5054, 2004.05.14. 선고 2003다38207),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 지역의 평가전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인근 평가전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비고
1	구평동 254	공장용지	1,177	준공업	1,300,000	담보	2023.03.27	세로 (가)
2	구평동 252	공장용지	322	준공업	1,300,000	담보	2023.11.17	세로 (가)

3) 인근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토지건물	면적 (㎡)	용도지역 구조	토지단가 (원/㎡)	거래가액(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구평동 101-35	공장용지 공장	827	준공업 일반철골	1,877,000	1,900,000,000	2022.04.19 (2017.05.16)
			556.4				
건물단가(일반철골구조 판별) : $630,000 \times 556.4 = 350,532,000$ (건물단가 : $700,000 \times 36/40 = 630,000$) 토지단가 : $(1,900,000,000 - 350,532,000) \div 827 \approx 1,876,601$							

4)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지리적 위치	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조건	지가수준 (원/㎡)	비고
본건 인근	2층 일주	주거기타	세로 (가)	약 1,350,000 ~ 1,650,000	위치, 면적, 형상, 고저 및 도로상태 등에 따라 차이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상기 사례 중 표준지 기호(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평가전례 기호(2)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로 비준한 기준시점 당시의 비교표준지가격}}{\text{기준시점 당시 비교표준지가격}}$$

구분	기준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평가전례(2) 기준 표준지가격	1,300,000	1.02256	1.00	1.02	1,355,915	1.982		
표준지의 기준 시점 현재가격	669,500	1.02184	-	-	684,122			
산정 내역	시점수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업지역(2023.11.17 ~ 2024.11.06) : 1.02256						
	지역요인	평가전례(2)와 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1.00	1.01	1.00	1.02	1.00	0.99	1.02
	요인비교	평가전례(2)와 비교 비교표준지는 접근 및 획지조건에서 다소 우세하나 지목이 임야인 점을 기타조건에서 감안하였음.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평가전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격차율, 인근지역의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지가 수준 및 지가동향, 감정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 및 타당성이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1.9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토지가액의 산정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단가를 산정하였음.

산식 = 공시지가(원/㎡)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기 호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669,500	1.02184	1.00	0.99	1.98	1,341,016	1,341,0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기 호	소재지	토지 건물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거래가액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구평동 101-35	공장용지 공장	827 556.4	준공업 일반철골구조	1,877,000	1,900,000,000	2022.04.19 (2017.05.16)

2) 거래사례 선정사유

인근지역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상기 거래사례 기호(1)을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하였음.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지가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업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고
2022.04.19 ~ 2024.11.06	1.04123	

※ 2024년 10월 지가변동률이 미발표되어 2024년 09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 하였음.

(4)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환경 조건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자연환경	공업용수 공장배수 지반, 지질 등
획지조건	면적,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기타규제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비교치
1	0.95	0.90	0.90	0.95	0.99	1.00	0.72
결정 의견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토지가액의 산정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단가를 산정하였음.

산식 = 사례단가(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기호	거래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	1,877,000	1.00	1.04123	1.00	0.72	1,407,160	1,407,000

3. 합리성 검토 및 토지가액의 결정

(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단위 : 원/㎡)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비고
1	1,341,000	1,407,000	

(2)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검토한 결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토지가액의 결정

기호	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1	261	1,341,000	350,001,000	현황도로부분
	70	447,000	31,290,000	
합계	331		381,29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

구 분	면적(㎡)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331	-	381,291,000	
합 계			₩381,291,000	

2. 결정의견

상기 유사부동산의 평가전례, 거래사례와 가격수준 등의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적정시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산58-6	임야	준공업지역	331	[261 70	1,341,000 447,000	350,001,000 31,290,000	현황 도로
합 계								₩381,291,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사하구 구평동 소재 구평동주민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소규모 공장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남동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나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폭 약 6m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공업지역(2017-10-18),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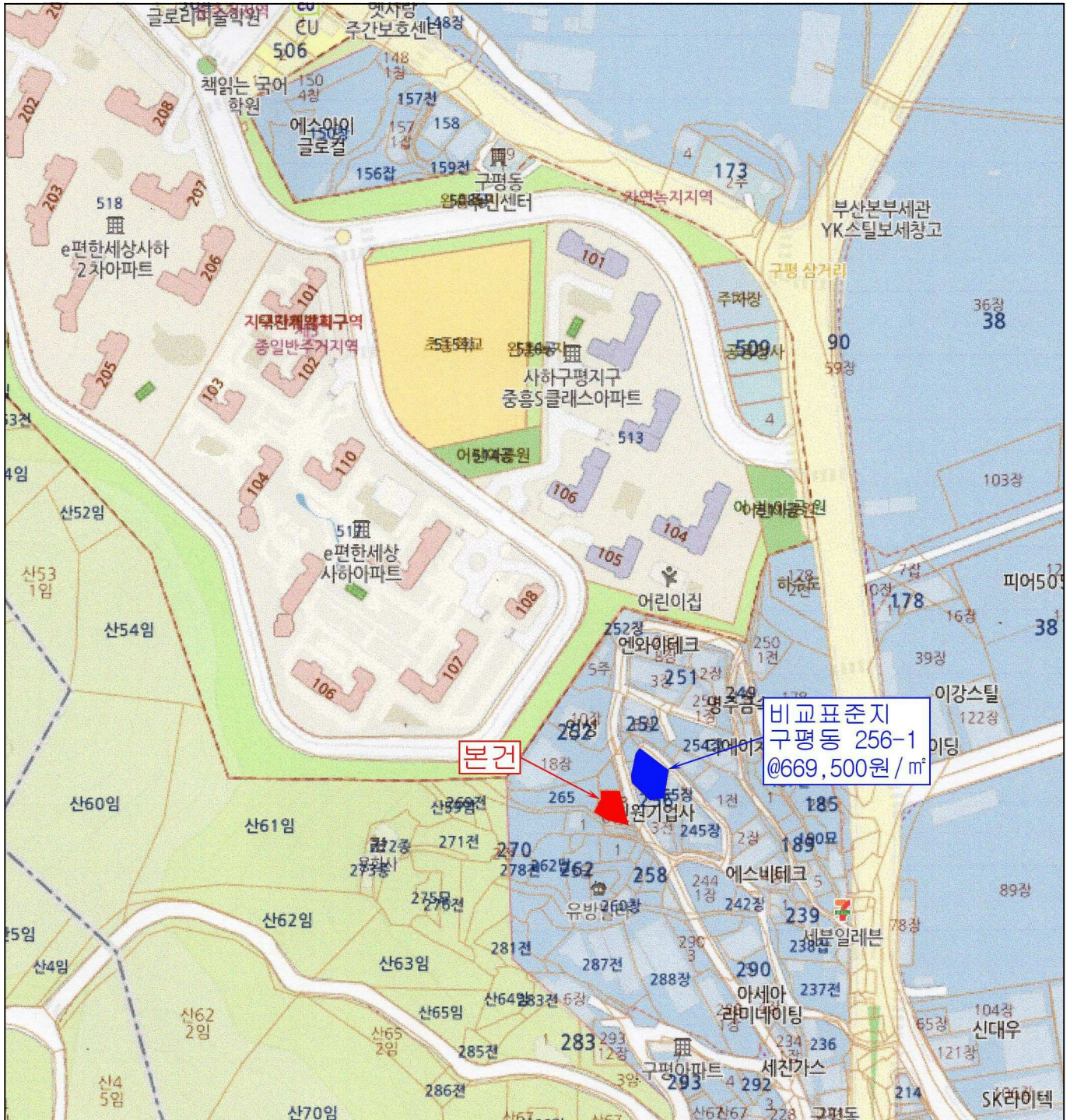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토지 남측으로 약 70㎡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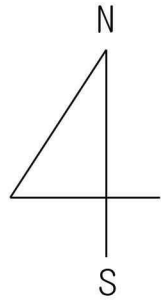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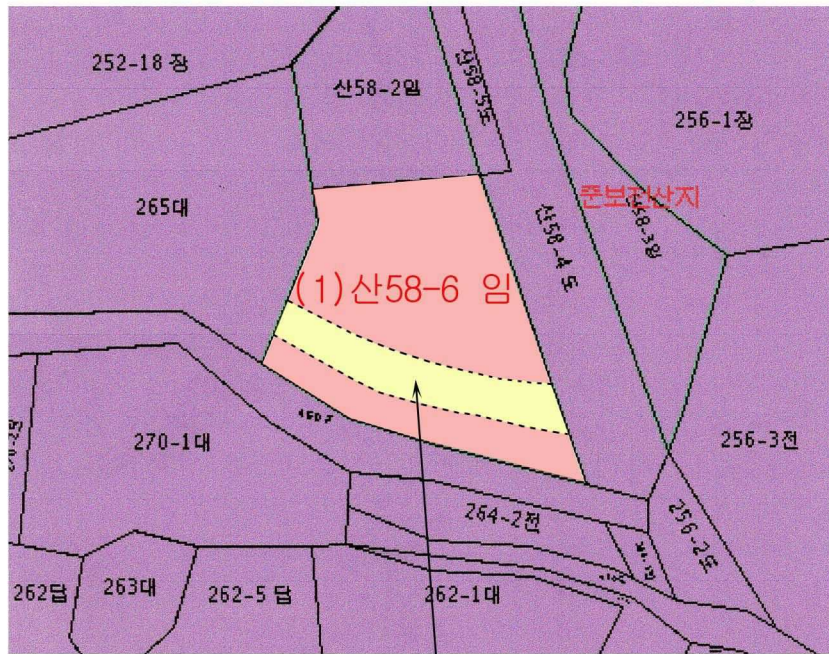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산58-6
-----	---------------------



지 적 도



S: 1/600



현황: 도로 (약 70㎡)





